

국립고궁박물관 전시홍보과 기간제 근로자 채용 최종합격자 공고

문화재청 국립고궁박물관 전시홍보과 기간제 근로자 최종합격자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0월 28일
국립고궁박물관장

1. 최종합격자

직급 (직종)	채용분야	응시번호	성명	휴대폰 뒷자리
연구원 (기간제)	교육 운영	8	채○화	2623

2. 임용일 : 2022. 11. 7.(월) (예정)

3. 최종합격자 제출서류 안내

가. 제출기한: 2022. 11. 2.(수)까지(기한엄수)

나. 제출서류

- ① 채용신체검사서 1부(건강검진 대체 통보서로 대체 가능)
- ② 행정정보공동이용사전동의서 (붙임1)
* 미제출 시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 각 1부 반드시 제출(주민등록번호 전체 표시)
- ③ 가족관계증명서 및 기본증명서(상세) 각 1부
- ④ 최종학력증명서
- ⑤ 결격사유확인서 (붙임2)
- ⑥ 공정채용 확인서 1부 (붙임3)
- ⑦ 반명함판(3×4cm) 사진 이미지 파일(jpg) * 이미지 파일 없는 경우 사진 3매 제출
- ⑧ 경력증명서 각 1부
- ⑨ 통장사본 1부
- ⑩ 장애인, 국가유공자, 의료수급대상자의 경우 관련 서류 사본 각 1부

다. 접수처: 국립고궁박물관 전시홍보과 채용 담당자 앞

- 주소 : (03045)서울특별시 종로구 효자로 12 국립고궁박물관 전시홍보과

4. 공지사항

가. 합격통보 후에라도 제출 서류의 허위 또는 부정 기재 사실이 발견될 경우, 소명절차를 거친 후 합격취소가 가능합니다.

나. 신원조회 및 성범죄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전력 조회 실시 결과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가 있는 자, 아동복지법 제29조의3의 취업제한명령을 받은 자 및 신체검사에 불합격 판정을 받은 자는 합격이 취소됩니다.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 02)3701-765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 1.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1부.
2. 결격사유확인서 1부.
3. 공정채용 확인서 1부. 끝.

(붙임 1)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1. 이용기관 명칭 : 문화재청 국립고궁박물관

2. 이용사무(이용목적) : 근로계약 및 인사업무

3. 공동이용 행정정보(구비서류)

연번	행정정보명	연번	행정정보명
1	주민등록표 등·초본		

※ 이용기관은 본인이 동의한 위 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기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 등록번호가 포함된 행정정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용기관이 요청하는 경우 기재하여 주십시오.(필요시 기재사항)

(주민등록 여권 외국인등록 운전면허) 번호 :

4. 정보주체(본인) 동의사항

○ 본인은 위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이용기관의 업무처리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구비서류(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만일, 본인이 위 행정정보 이용에 대해 동의를 하지 아니할 경우에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본인이 해당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년 월 일

대상자 본인

성 명 :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

전화번호 :

(붙임 2)

결격사유 확인서

○ 성 명:

○ 생년월일:

본인은 문화재청 공무원 등 근로자로 최종 임용되기 전 다음의 결격사유를 확인하였으며 해당사항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기관으로부터 징계 해고 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사람

임용 후 확인서 내용과 달리 사후 결격사유가 확인될 경우 계약 해지 등 불이익 처분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 . . .

확인자:

(인)

문화재청장 귀하

